

# 定 款

사단법인 한국기상산업협회

# 정 관

제정 2015. 03. 13.  
개정 2016. 03. 10.  
개정 2023. 04. 26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 협회는 “기상산업진흥법 제6조”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들이 “민법 제32조” 및 “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”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“한국기상산업협회”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라 하고, 영문으로는 “Korea Meteorological Industry Association”(약칭 KMIA)로 표시한다.

### 제2조 (목적)

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와 복리를 증진하고,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, 기상기술 및 기상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상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, 대·중소기업간 공생발전과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사무소)

- ①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<개정, 2023.04.26.>
-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### 제4조 (사업)

-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1. 기상관련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견의 <개정, 2016.03.10.>
  2.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, 지도, 진단, 조사, 연구, 자료 발간, 홍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<개정, 2016.03.10.>
  3. 기상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<개정, 2016.03.10.>
  4. 기상산업 대·중소기업간 공생발전과 컨소시엄 구성 연계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 지원<개정, 2016.03.10.>

5. 기상산업 관련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개척단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<개정, 2016.03.10.>
  6. 해외공사, 기상전문공사 계약 및 등록·인증, 각종 실적 증명 대행 등
  7. 기상산업 관련 학술연구활동 <신설, 2016.03.10.>
  8. 기상장비의 기술 기준 및 단체규격에 대한 개발·보급에 관한 사업 <신설, 2016.03.10.>
  9. 기상장비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업 <신설, 2016.03.10.>
  10. 기상 관련 표준화 사업 <신설, 2016.03.10.>
  11.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<신설, 2016.03.10.>
- ② 협회는 기상산업의 진흥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, 2016.03.10.>

### **제5조 (국제기구 가입)**

협회는 회원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진출대상국과 긴밀한 교섭을 가지며 친선과 상호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.

## **제2장 회 원**

### **제6조 (회원의 자격)**

-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 <개정, 2023.04.26.>
1. 정회원은 기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상사업자와 기상산업과 관련된 사업자, 조합,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,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. <개정, 2016.03.10., 2023.04.26.>
  2. 삭제 <2023.04.26.>
  3. 특별회원은 협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중앙정부, 지자체, 정부 투자기관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, 개인으로서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 <개정, 2016.03.10., 2023.04.26.>
-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의 가입 및 회비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, 2023.04.26.>

### **제7조 (회원의 가입)**

- ①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(이사회)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하여 제6조에서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③ 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- ④ 단체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협회는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회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한다.

[본조신설, 2016.03.10.]

#### **제8조 (회비)**

-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
- ② 입회비와 연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하되, 이사회는 회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회비, 특별회비를 차등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, 2016.03.10.]

#### **제9조 (회원의 권리)**

- ① 정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<개정, 2023.04.26.>
- 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#### **제10조 (회원의 의무)**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납부
4. 품위 보전

#### **제11조 (회원의 탈퇴와 제명)**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 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## 제3장 임원

### 제12조 (임원)

-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1. 회장 1인
  2. 부회장 3인 이내 (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.) <개정, 2016.03.10.>
  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(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.)
  4. 감사 2인 이내 <개정, 2016.03.10.>
- ②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상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상근부회장은 그려하지 아니한다. <신설, 2023.04.26.>

### 제13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회장 · 부회장 · 감사는 이사회에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, 2016.03.10.>
- ②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<신설, 2016.03.10.>
-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제14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<개정, 2023.04.26.>
-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감사의 직무 수행은 이사의 임기와 겹치지 않도록 격년으로 임한다. <신설, 2023.04.26.>

### 제15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## **제16조 (임원의 결격사유)**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## **제17조 (임원의 직무)**

-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선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, 2016.03.10.>
-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사무국을 총괄하고, 회무를 집행한다. <신설, 2016.03.10.>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, 2016.03.10.>
  1. 협회의 재산 상황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2.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3.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4.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하는 일

## **제18조 (임원의 보수와 예비정산)**

임원은 상근 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## **제19조 (고문)**

협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1. 고문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.
2.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.

## 제20조 (전문위원)

-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전문위원은 임원 또는 일반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,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전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협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21조 (자문위원)

- ① 회장은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회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 제4장 종 회

## 제22조 (총회의 구분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## 제23조 (총회의 소집)

-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
  3. 재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③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일 7일 전까지 해당 회의 참석 대상자에게 회의 일자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24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사업계획, 예산 · 결산의 승인, 기본재산의 처분 · 취득에 관한 사항

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협회의 해산
5.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6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

### **제25조 (의결정족수)**

-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 제1호의 경우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, 제24조 제4호의 경우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, 2016.03.10.>

### **제26조 (대리인 출석의 제한)**

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게 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장에게 총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
### **제27조 (서면결의)**

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**제28조 (회의록의 작성 보관)**

총회의 회의록은 개최 일시, 장소, 출석회원 수 및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## **제5장 ◎ 이 사 회**

### **제29조 (이사회의 구성)**
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### **제30조 (이사회의 소집)**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-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 **제31조 (대리인 출석의 제한)**

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게 하고,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### **제32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**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부회장 및 상임 이사의 선임과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보선
2. 직제, 인사관리, 예산회계, 회비, 급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심의
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복리, 포상 및 징계
6. 회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과 기금의 전용
7. 지방 및 해외의 지부 설치
8.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9.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부의(附議 : 토론에 부침)하는 사항

### **제33조 (정족수)**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<개정, 2016.03.10.>
- ② 의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 및 전자 문서로 의결 할 수 있다. <신설, 2016.03.10.>

### **제34조 (회의록의 작성 보관)**

이사회의 회의록은 개최 일시, 장소, 출석회원 수 및 결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## **제6장 사무국**

### **제35조 (사무국)**

-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협회의 통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. <개정, 2016.03.10., 2023.04.26.>>
- ② 협회는 협회의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원(사업자, 기업체, 단체 등)으로부터 관계 직원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, 2016.03.10.>>
- ③ 사무국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과 직제, 인사관리, 복무,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삭제 <2023.04.26.>

### **제35조의 2(사무국장)**

사무국장은 상근부회장(궐위 시에는 회장)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처리
2. 직원의 지휘 · 감독
3.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

[본조신설, 2023.04.26.]

### **제35조의 3(직원)**

- ① 사무국장은 상근부회장(궐위 시에는 회장)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.
- ② 직원은 상근부회장(궐위 시에는 사무국장)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, 2023.04.26.]

## **제7장 재산 및 회계**

### **제36조 (재산)**

-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- 1.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
- 2. 회비
- 3. 사업에 따른 수입
- 4.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
- 5. 기타 수입

### **제37조 (잉여금의 적립)**

- ① 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 잉여금의 1할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적립금 관리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.

### **제38조 (회계연도)**

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### **제39조 (세입금의 수납기한)**

협회는 매 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상 회비와 연회비는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.

### **제40조 (세입)**

협회의 세입은 입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, 보조금, 정부 또는 회원사 등이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, 기부금,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과 위탁사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### **제41조 (세출)**

- ① 모든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며, 항목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- ②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- ③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를 2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.
- ④ 본 협회의 수지결산차액이 생길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거나 또는 다음 사업 연도에 이월시킨다.

### **제42조 (예산편성 및 결산)**

-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다음 서류를 작성,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1. 사업보고서
  2. 재산목록
  3. 대차대조표
  4. 세입세출 결산서
  5.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안

#### **제43조 (예산회계에 관한 규정)**

협회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**제8장 포상 및 징계**

#### **제44조 (포상)**

협회는 해외수주 또는 협회 사업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등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로장,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#### **제45조 (징계의 종류)**

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고
2. 총회 또는 이사회의 3회 이내의 출석정지
3. 회원의 자격정지
4. 회원의 자격상실

#### **제46조 (징계의 사유)**

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, 2016.03.10.>

1. 회원이 정관이 정한 의무에 배치하여 회원의 단결을 저해하거나 기상산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2.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때
3.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때 <개정, 2016.03.10.>
4. 기타 정관이 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때

### **제9장 보 칙**

#### **제47조 (해산)**

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.

1. 총회에서의 의결
2. 본회의 합병 또는 분리
3. 본회의 파산

4.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명령
  5. 기타 해산사유 발생
- ② 본 협회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, 2016.03.10.>

#### **제48조 (정산인)**

본 협회의 해산 시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#### **제49조 (정관변경)**

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# **제50조 (잔여재산의 처분)**

본 협회의 해산 시 협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기상청장의 허가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.

#### **제51조 (서류 및 장부의 비치)**

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정관
2.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
3. 회원 명부
4. 결산관계서류
5. 재산목록

#### **제52조 (업무보고)**

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**제53조 (준용규정)**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**제54조 (규칙제정)**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**제1조 (시행일)**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< 2023.04.26. >

**제1조 (시행일)**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